

미국 수출, 지금 점검해야 할 CBP 핵심 이슈

[미 CBP 통관 리스크]

철강 함량가치 과세와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책·실무의 충돌

CBP의 정보제공요청(Form 28)과 관세 최소화 전략
최근 CBP 사전심사 사례로 보는 시사점과 활용 방안 (13p)

[통상 현안 체크]

“관세·양자협상 공세 예고”

미 USTR ‘2026 통상정책의제’ 공개 (11p)

[이주의 초점]

‘호르무즈 위기’ 해상물류·에너지 공급망 긴장...
정부, 수출입기업 긴급지원 (4p)

[위클리 뉴스]

“중동 사태 대응” 관세청, 유탄화물 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 면책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EU ‘산업가속화법’ 추진 내용 및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영향 (7p)

[품목분류 동향]

니켈 추출 후 남은 화학공업 잔재물의 HS Code (41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3월 9일(통권 제2169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호르무즈 위기' 해상물류·에너지 공급망
어디까지 영향 미치나

07 Weekly News

통상 현안 체크

- 11** "관세·양자협상 공세 예고"
취임 2년차 트럼프 2기 통상전략 발표

오피니언

- 13** 미 CBP 통관 리스크
심종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국제통상그룹
파트너·공인회계사
IEEPA 관세 위험 판결 이후의 세계, 대혼돈의
멀티 관세
김사웅 세인관세법인 컨설팅사업부 총괄팀
본부장·관세사
미 CBP의 정보제공요청(Form 28)과
관세 최소화 전략
홍용택 KOTRA 워싱턴 D.C. 무역관(부장)
"CBP 검증 강화 시대" 한국 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관세행정실무해설

- 32**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제7308.90호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은 한국산이어야 할까
- 39** 질의응답사례
반려동물용 배변봉투의 HS Code

품목분류동향

- 41** 세번 바로잡기
니켈 추출 후 남은 화학공업 잔재물
-

‘호르무즈 위기’ 해상물류·에너지 공급망 어디까지 영향 미치나

정부, “단기 영향은 제한적” 수출기업 지원 대책 가동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글로벌 해상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글로벌 해상물류 긴장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과 세계를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해상 통로로,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약 2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동맥’으로 불린다.

최근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운송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월 4일 발간한 보고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상황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 분석’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하루 평균 3척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평시 대비 약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해상무역기구(UKMTO)는 3일 기준 이곳을 통과한 유조선이 한 척도 없다고 전했다.

선박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선사와 화주들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중동 정세와 해상 운임, 보험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미주나 서아프리카 등 대체 항로와 선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상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박 위치

및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현재 컨테이너 해상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하고 있어 당장 물류망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원유 도입의 70%가량이 중동 항로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 물류 비용 상승, 공급망 재편 등 영향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확대는 유조선 운임에 즉각 반영되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대형 원유 운반선(VLCC)의 중동-중국 노선 운임은 2월 13일 대비 약 3.3배 상승했다. 선박들이 지정학적 위험을 피해 대체 선적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된 데다 우회 운항에 따른 운송 거리 증가로 전체적인 운수 효율을 나타내는 '톤 마일' 수치가 상승하며 운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항 제한이 한 달간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기준 원유 도입분 약 300항차, LNG 도입분 약 100항차 수준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5일(현지시간)에는 이란의 유조선 공격 소식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일,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와 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석유 수급과 관련해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조선 상황과 보합·운임 변동,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가스 수급 역시 상당량의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의 80% 이상을 중동 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어 카타르산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도 추진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는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석유·가스 이외에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품목도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당장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며,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잠재 리스크가 지적됐다. 석유화학 원료인 납사는 수입물량 중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비중이 약 54%에 달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정부 대응 체계 강화… 수출기업 지원 대책 마련

수출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3% 수준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은 1,0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부 4일 공급망 안정화기금으로 원유 등 구매자금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을 가동, 북미·중남미 등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자금 지원한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이 발생하면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동 수출 실적(계약 포함)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피해가 큰 기업은 별도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시장 발굴 시장조사와 신규 바이어 매칭 등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UAE·사우디·이라크·카타르·쿠웨이트·이란·바레인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로 확대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험금 가지급,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출 거래선 다변화를 위한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지역 수출 규모와 비중 등을 토대로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하며 현지 동향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해운선사와 운송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상운송 가능 여부 등 현지 물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5일 산업부 주재로 열린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업종별 협단체는 해상운송 차질,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중동 사태 대응 “유턴화물 우선 처리·수출신고 정정 면책”

관세청이 중동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물류 전반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세정 지원과 통관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경우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동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은 중동 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수출입 물류 지연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관세청은 우선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동으로 향하던 수출화물이 출항하지 못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계를 통해 해당 화물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유턴화물에 대해서는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출신고 후 선적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수출신고 후 적재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할 예정이다. 중동 상황과 관련된 수출 신고 정정이나 취하 건에 대해서도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유동성 지원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일 즉시 처리해 자금 흐름 악화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기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중동 상황으로 운송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납기 연장, 분할 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지면서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운송비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과 수입 단가를 기반으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 세관에서 중동 상황의 영향으로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과 관세 행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6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의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국세청, 중동 관련 세정지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 31일이었던 납부기한은 피해기업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 3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로 변경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된 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늘어나 법인은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이나 발주가 취소되거나 선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 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EU '산업가속화법' 추진...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영향은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월 5일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업종별 영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및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 기준과 역내 생산 요건을 도입하고,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 에너지집약 산업과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참여 시 저탄소 및 역내산 요건이 적용된다. 역내산 여부는 EU 관세법상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에 가입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산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공공지원 제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원국이 구매·소비 지원 제도를 설계할 때 저탄소 기준과 역내 생산 요건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소형 무공해 차량에 대한 '슈퍼 크레딧' 인정 조건에 역내 조립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가속화법은 외국인 투자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 및 부품,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신흥 전략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제3국 투자자가 1억 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EU 당국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다.

투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고용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분 제한, 합작투자 참여, 기술 이전 등 총 6개 조건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EU와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승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법안의 세부 요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철강 업계는 저탄소 철강의 구체적인 기준이 경쟁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 EU 역내 조립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과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기로... 4개 분야 FTA 개선 사항 합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 싱가포르는 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분야별 표준문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세부조항을 선택·조합하는 방식의 모듈형 신통상협정을 적용해 규범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4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 수립,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ASEAN 시장 진출 기반 조성, ▲통관 절차 개선을 통한 무역원활화 분야 행정 협력, ▲항공기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각 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SMR 협력 MOU’를 체결해 소형원전 분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소형원전의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싱가포르 역시 AI 데이터 센터 확대 및 탄소중립 등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기에 이번 MOU 체결을 통한 실익이 기대된다. | 서준식 기자 |

한·필리핀, 무역·국방·원전 등 10개 분야 MOU 체결

한국·필리핀 수교 77주년 기념으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국방·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월 3일(현지시간) 양국 정부는 ‘무역·투자·경제협력 MOU’,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필리핀 신규 원전 도입 협력 MOU’ 등

10건의 약정 및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무역·투자·경제협력, 농업협력, 지식재산 분야 MOU를 통해 협력 관계가 고도화되길 희망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필리핀 국방부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한국 방산업체 수가 확대됐고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군수지원 관련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2032년 원전 도입을 공식화한 필리핀에 원전 분야 인력 확대를 모색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를 개최해 산업·통상 협력 전반을 논의해 왔다. 2024년 12월 한국·필리핀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이 확대됐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디지털 경제, AI 활용 분야 등으로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경제협력 현안에 관한 상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서준식 기자 |

‘K-푸드 수출지원 허브’ 출범, 관세·검역·물류 등 통합 상담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식품 수출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해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출지원 허브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간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총 11개 유관기관·협회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수출기업은 하나의 대표 창구에서 관세·통관, 위생·검역, 물류, 해외 인증, 마케팅, 외환, 지식재산권 등 총 9개 분야에 관한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T 홈페이지 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게시판이나 대표번호(1566-1472)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상담은 참여 기관과 aT 국내 지역본부, 해외 지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수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운영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확대해 일대일 맞춤형 온라인 자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현지화 지원 사업이나 맞춤형 해외 시장 정보 조사 등 후속 지원으로 연계해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양자협상 공세 예고” 취임 2년차 트럼프 2기 통상전략 발표

미 USTR ‘2026 통상정책의제’ 공개... 관세·핵심광물·USMCA 재편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일(현지시간) ‘2026년 통상정책 의제(Trade Policy Agenda)’를 발표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임 2년차를 맞이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주의(reciprocity)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과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USTR은 매년 2~3월 ‘대통령 통상정책의제 및 무역협정 프로그램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 의회에 제출한다. 3월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미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6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관세와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한 공세적 통상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USTR은 지난해 정책 성과로 상품 무역적자 감소, 대중국 무역적자 32% 축소, 상품·서비스 수출 증가 등을 제시하며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호주의 무역협정 확대... 301조 집행 강화

이번 통상정책의제의 핵심은 ‘상호주의 무역협정(ART,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확대다. 미국은 이를 통해 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 등과는 프레임워크 형태의 합의를 진행 중이다. USTR은 이러한 합의(Deal)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무역협정(Agreement)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주의 협정을 통해 미국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전자적 전송물 관세 유예 지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동차 규제 기준 수용 등 다양한 무역장벽 완화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신규 무역협정의 이행 여부를 강력히 점검하고 무역법 301조 등을 적극 활용해 불공정 조치에 대응할 계획이다. 글로벌 과잉 생산, 수산물·어업 관련 불공정 관행, 농업 보조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전략 강화... 핵심광물 협정 추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산업 공급망 확보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미국은 반도체, 자동차, 금속, 의약품, 에너지 투입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무역협정(ATCM, 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은 핵심광물 채굴·정련·가공 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광물에 대해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형태의 국경조정 가격 메커니즘 도입(border-adjusted price mechanism)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USTR은 협정에 포함될 주요 합의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EU, 멕시코, 일본 등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터리 소재와 제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역시 이해관계가 큰 만큼 협상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국·일본·대만 등 우방국의 생산 투자(greenfields)는 적극 유치하되, 경제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자본 유입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USMCA 재검토·대중 경제 병행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에 대한 공동검토(Joint Review)도 주요 정책 과제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적자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 디지털 규제, 농산물 시장 접근 등 무역 관행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북미 지역의 과잉 생산과 비시장경제국의 투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 강화와 우회수출 차단 조치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북미 생산거점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국 기업 역시 멕시코와 미국에 구축한 자동차·부품 생산기지와 연계된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협정 개정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통상정책은 견제와 관리 전략이 병행될 전망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비시장경제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상외교를 통한 관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시진핑 중국주석의 미국 답방,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및 G20 정상회의 등 미·중 정상외교 일정이 예정된 점도 이러한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과잉 생산, 산업 보조금, 비시장 정책 등 구조적 왜곡에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이어가고 북미 협정을 통한 우회 수출 차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무역법 결합한 공세적 통상정책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정책 의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전략이 관세와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1기 행정부와 비교해 관세정책 전면화, 미국 내 생산 확대, 상호주의 강조 등에서 보다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합의 이행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 만큼 미국 내 법을 활용해 상대국의 합의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관세 조치와 공급망 협정을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김성은 기자 |

미 CBP 통관 리스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집행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통관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품목분류, 원산지를 중심으로 통관 단계는 물론 사후 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조사와 관세추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CBP 동향과 통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한다.

IEEPA 관세 위헌 판결 이후의 세계, 대혼돈의 멀티 관세

- 철강 함량가치 과세와 상호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책·실무의 충돌 -



심 종 선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국제통상그룹 파트너·공인회계사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권한 남용을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선언한 이 판결은, 이미 부과·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 미 세관국경 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실무 관행, 국제무역법원(CIT,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역할, 그리고 의회의 정치적·입법적 개입까지 연쇄적으로 흔들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 함량가치 과세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기업에 이번 사안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리스크이자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본 칼럼에서는 ▲상호관세 환급의 법적 구조와 실무적 선택지, ▲환급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저항, ▲의회 입법 동향, ▲철강 함량가치 과세에 대한 CBP 내부 해석 변화, ▲실제 조사 및 소송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이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상호관세 환급

1. 위법 판결 이후의 출발점: “환급은 원칙, 문제는 방식”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상호관세를 포함한 IEEPA 관세는 이제 위법한 조세가 됐다. 법리적으로 보면, 위법하게 징수된 조세는 환급이 원칙이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느냐다. 이 지점에서 실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현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환급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환급신청 방식이다. 아직 정산되지 않은 통관 건(Unliquidated Entries)에 대해 수정신고서(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제출하거나 이미 정산이 완료된 통관 건(Liquidated Entries)에 대해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둘째, CIT가 향후 결정할 특별 환급 절차에 따라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로다. 셋째, 미 의회가 새로 입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CIT나 CBP가 ‘특별 환급 절차’를 확정·공표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은, 선불리 PSC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할 경우 바로 정산이 완료돼 버리는 바람에 환급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CIT가 지난해 말 “정산이 완료된 통관 건에 대해서도 재정산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PSC나 Protest를 통한 환급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환급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수출·수입 내역 전반을 점검하고 각 통관 건별로 관세납부액, 정산 여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후 환급 대상 선별, 통관대행업체를 통한 PSC 요청, 필요시 직접 PSC 제출, 그리고 CBP 질의에 대한 대응까지 일련의 작업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단순 행정업무가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준(準)소송

단계의 대응에 가깝다.

2. “환급하지 말라”는 정치적 압력과 그 한계

이번 사안을 둘러싼 또 하나의 변수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다.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는 “관세는 이미 가격에 전가돼 미국 소비자가 부담했으므로, 환급금은 수입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나아가, 수입자가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상태에서 환급까지 받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라는 논리도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수입자의 부당이득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관세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전가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관세가 있었고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CIT로 하여금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상급심인 대법원이 과세 근거 자체를 위법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하급심이 환급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법체계상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 환급 자체를 막기보다는, 환급 이후의 귀속 문제를 입법이나 조세를 통해 조정하려는 시도가 보다 현실적인 경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천문학적 관세환급 요구에 ‘침대축구’ 전략을 쓰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기업이야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필자가 만나 본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혹은 정부가 대응해 주기를 바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기존의 일반적인 관세환급 절차를 활용할 필요성이 다시 등장한다. PSC는 정산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통관 건에 대한 환급신청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에 대해서라도 PSC를 제출하는 편이 낫다. 준소송 단계에 해당하는 Protest라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Protest를 실행할 여력이 없는 기업엔 PSC가 가장 현실적인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3. 의회의 개입: 환급을 ‘정책’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

실제로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2026년 관세 환급법(Tariff Refund Act of 2026)’은 180일 이내 환급 및 이자 지급, 중소기업 우선 환급, 그리고 관세 비용을 전가한 기업의 경우 환급 효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인 ‘불법 관세 환급법(Illegal Tariff Refund Act)’은 보다 공격적이다.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에 대해 100%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환급을 허용하되, 그 경제적 효과를 다시 소비자 쪽으로

환원시키려는 간접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어차피 추정당할 것이라면, 혹은 어차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면, 애초에 환급받을 유인이 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나.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통과 여부는 정치 지형에 따라 불확실하며, 설령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개별 거래 구조의 복잡성을 입법만으로 정밀하게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 가능한 모든 권리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II.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별 관세의 함정 '함량가치'

1. 철강 함량가치 과세: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는 해석

환급 이슈와 함께 기업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품목별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과세에 대한 CBP 내부 해석의 구체화다.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개별 기업에 대한 CBP 조사와 12월 3일자 기초금속센터(Base Metals CEE)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 구체화된 CBP의 해석이 공개됐다.

구분	Material	수량	수량단위	단가	금액(USD)	철강	알루미늄	단위환산	중량(kg)	제원/주조국
재료비	9406272	5.00	EA	3.000	15.00	Y		0.3kg/EA	1.50	Korea
	3890180	20.00	kilo gram	1.200	24.00	Y			20.00	China
	6707187	15.00	kilo gram	1.500	22.50		Y		15.00	U.S.A
	3653225	0.10	Roll	300.000	30.00		Y	10kg/Roll	1.00	Korea
	1388350	10.00	square meter	450.000	4,500.00		Y	0.3kg/m2	3.00	India
	3529263	10.00	EA	12.000	120.00					
	6416637	4.00	EA	30.000	120.00					
	9876376	1.00	EA	93.000	93.00					
	3047768	30.00	gram	5.000	150.00					
	소계				5,074.50					
가공비	노무/기계시간	15.00	시간		45					
제조원가					5,749.50					
일반관리비					287.48					
이윤					574.95					
공장도가격					6,611.93					
내륙운송비					300.00					
수출신고 등 제 비용					150.00					
F.O.B. 가격					7,061.93					
해상운임					500.00					
보험료					150.00					
CIF 판매가격					7,711.93					

함량가치 신고 내역 및 관세액										(단위: USD)
구분	제원/주조국	제조원가	일반관리비/이윤	내륙운송/수출신고	F.O.B.가격	중량	단가	관세율	관세금액	
철강	OTH	39.00	5.85	3.05	47.90	21.50	2.23	50%	23.95	
알루미늄	OTH	4,530.00	679.50	354.55	5,564.05	4.00	1,391.01	50%	2,782.03	
	USA	22.50	3.38	1.76	27.64	15.00	1.84	0%	-	
기타		1,158.00	173.70	90.63	1,422.33			15%	213.35	
계		5,749.50	862.43	450.00	7,061.93				3,019.33	

철강 함량가치 산정 예시. 실제 산정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다(출처: 저자 작성)

이 해석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철강 함량가치는 제조국에서의 원재료 '구매원가'가 아니라, 미국 수입자가 철강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가격'이라는 점이다.** 이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원소재의 구매원가만 함량가치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추정의 빌미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른 하나는, **노무비·제조경비와 같은 가공비를 비철강 함량으로 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CBP 지침은 “**철강 함량을 먼저 산정하고 나머지를 비철강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나, **그 순서를 반대로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공비를 철강 함량가치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하방산업(Downstream Industry)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모두 철강 함량으로 봐 50%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품목별 관세는 본래 미국의 철강산업을 지킴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철강기업을 넘어 가전, 기계, 로봇, 발전, 산업용 차량 등에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통째로 미국의 세수로 넘어갈 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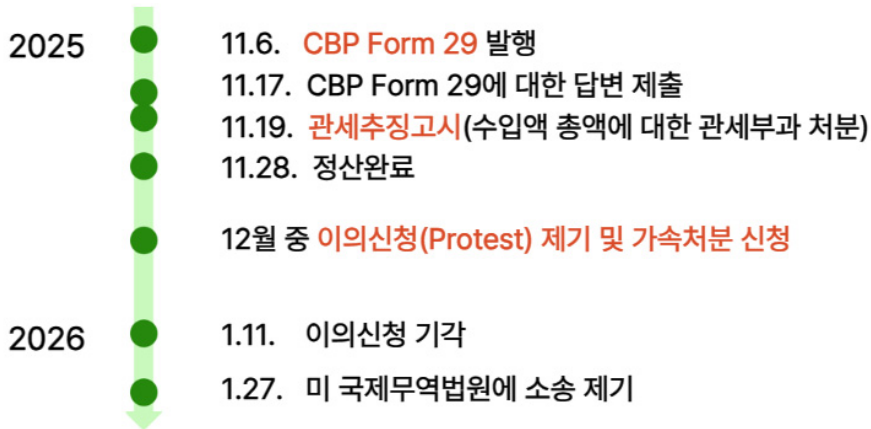
2. CBP 조사 확대와 첫 CIT 소송이 던지는 경고

이러한 해석 변화는 이미 구체적인 집행 단계로 진입했다. CBP는 철강 함량가치 산정과 관련해 서면질의(CBP Form 28 또는 CBP Form 29)를 발송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했다. **기초적인 가공만을 거친 철강 제품에서 시작된 세관 조사는 이제 산업용 기계 등으로 그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철강 함량가치의 산정 방법, 가산·차감 항목, 산정 주체, 증빙서류, 구성요소 도식, 제품 사진까지 요구하며,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명 실패는 총액에 대한 50% 과세로 즉각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형식 점검이 아니라, 함량가치 산정 논리 자체를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아니라, 소명 실패를 유도함으로써 추정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칫 상호 관세를 환급받으려다 철강 함량 100%로 간주돼 오히려 더 높은 관세가 추정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더 나아가, 철강 함량가치 과세와 관련한 첫 CIT 소송 사례는 CBP의 최근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익스프레스 패스트너(Express Fastener)사는 나사(screw) 및 접합장치 패스트너(fastener) 제품을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제73류 제품에 대해서도 철강 함량가치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담은 2025년 6월 13일자 대통령 포고문에 따라, 가공비와 이윤을 비철강 함량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CBP는 가공비와 이윤을 비철강 함량으로 신고한 수입자의 신고를 부인하고, 수입품 총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의신청은 신속히 기각됐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는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행정 단계에서의 구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사건일지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할 수 있다. 2025년 11월 6일, CBP가 공문을 발송한 지 불과 11일 만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구한 정보의 수준에 비춰볼 때,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바로 추정 처분을 내렸다. 제출된 답변서를 볼 의지가 애초에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 Express Fastener 사건 일지 ●



III. 결론: 지금 기업이 해야 할 일

지금, 이 시점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이 경우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에 대해 PSC를 통한 환급신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산정 로직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아무런 증빙 없이 철강 함량가치를 산정한 기업은 증빙과 내부 정책을 구비해야 한다. 가공비를 철강 함량가치에 포함해야 한다는 CBP의 비공식 해석은 아직 CIT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추징에 처음부터 백기 투항할 필요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의 법치제도는 아직 신뢰할 만하다. 그럼에도, 추징 사태를 대비해 CEO 레벨에서 액션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대응은 '소송을 염두에 둔 기록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CBP 질의에 대한 답변, 산정 논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향후 Protest와 CIT 소송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법 관세 이후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 행정, 정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새로운 관세가 다층적으로 등장할지 불확실한 이 국면에서, 기업의 대응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와 권리 보전 전략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관세 부담과 소송 리스크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미 CBP 통관 리스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집행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통관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품목분류, 원산지를 중심으로 통관 단계는 물론 사후 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조사와 관세추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지는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CBP 동향과 통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한다.

미 CBP의 정보제공요청(Form 28)과 관세 최소화 전략

- 비특혜원산지 검증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및 사전심사 활용 -



김 사 용 | 세인관세법인 컨설팅사업부 총괄팀 본부장·관세사

I. “30일 내 입증하라” 추가관세 리스크, CBP 정보제공요청

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판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임시 글로벌관세를 시행하며 미국 관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관세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특히 수출기업이 송장(invoice)에 기재한 원산지는 관세율 적용에서 핵심 요소가 됐다. 수입통관 시 미국 CBP에 신고하는 HTS(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에 따라 산정된 관세액은 예정세액이며, 수입 이후 즉시 확정되지 않고 약 314일 경과시점을 전후로 정산(Liquidation)됨으로써 관세액이 최종 확정된다. CBP는 수입신고내역을 사후심사할 권한이 있고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해 수입자에게 관세액에 영향을 미친 상기 요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해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국내 수출기업을 상대로 미국 CBP는 인보이스에 'Made in KOREA'로 표시한 수출물품에 대해 비특혜원산지 검증을 목적으로 정보제공요청을 했다. 만약 한국산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15%

상호관세만 부과되지만, 중국산으로 판명 시 상호관세 10%, IEEPA 펜타닐관세 10%, 무역법 301조 관세 25%로, 총 45% 관세가 부과되는 사안이었다(관세율은 당시 기준). 수출기업은 한국에 있는 최종생산자이며 중국산 반제품을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통해 미국에 수출했다. 기존 한·미 FTA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이라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지만, 비특혜원산지는 미국 연방관세규정 19 C.F.R. PART134조에 근거한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적용하기 때문에 CBP가 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착수한 것이었다. CBP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수출자는 자료를 제공했고 CBP는 중국산 반제품이 완제품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이유로 수출물품을 중국산으로 판단했으며 약 〇〇억원에 달하는 추가관세 납부를 요구했다.

사실 한·미 FTA 체제에서 특혜원산지 적정성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은 흔한 일이었다. 2025년 상호 관세가 시행된 첫해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비특혜원산지 검증과 한국산 불인정에 따른 추가관세 납부는 우리 수출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동안 수출기업은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제조공정상 최종생산국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Made in KOREA'로 기재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 CBP는 비특혜원산지에 대해 언제든지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만약 실질적변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산 불인정에 따른 추가관세 납부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질적변형을 통한 원산지 인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발생해야 하는데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미국 관세규정에 생소한 수출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2개국 이상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2개국 이상에서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1. CBP 정보제공요청 절차

미국 CBP의 정보제공요청은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뉜다.

The image displays the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o request information from foreign companies. The for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Request for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he 'Request for Information' section includes fields for the requester'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as well as a section for the respondent to provide details about the requested information. The 'Instructions' section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how to respond to the request, including requirements for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response.

Request for Information (Form 28)

Section 1: Requester Information

- Name: []
- Address: []
- City: [] State: [] Zip: []
- Country: []
- Phone: []
- Fax: []
- E-mail: []

Section 2: Respondent Information

- Name: []
- Address: []
- City: [] State: [] Zip: []
- Country: []
- Phone: []
- Fax: []
- E-mail: []

Section 3: Request Details

- Request Number: []
- Request Date: []
- Request Description: []
- Requester's Interest: []
- Respondent's Interest: []

Section 4: Response Information

- Response Number: []
- Response Date: []
- Response Description: []
- Respondent's Interest: []
- Requester's Interest: []

Section 5: Privacy Act Statement

Privacy Act Statement: This form is used to request information from a foreign company.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Section 6: Instructions

Instructions: This form is used to request information from a foreign company.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The information requested i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origin of the goods.

CBP Form 28 양식(출처: CBP 홈페이지)

1) Request for Information(Form 28)

정보제공요청은 특정 Entry(수입신고)를 선별해 미 CBP가 수입자에게 Form 28 양식 형태로 요청하며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일반적으로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 내용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 특수관계 여부,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해당 거래에서 로열티, 생산지원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거래계약서, 검증 물품 설명자료, 소요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 설명, CBP 담당자의 구체적인 요청 정보다.

CBP 담당자의 요청 정보가 핵심 사항인데 비특혜원산지 검증의 경우에는 청구서(인보이스), 운송장, 포장명세서를 포함하는 선적 서류, 원산지증명서, 대금지불증빙, 공급망 단계별로 원산지증빙자료, 단계별 제조공정이력을 요청받게 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고 해당 자료를 수출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원료공급자, 완제품생산자로부터 수취해야 한다. 요청 자료 수준이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전반에 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급망 당사자 간 자료 제출에 대비한 협의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정보제공요청을 기한 내 회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만약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이었다면 이에 더해 함량가치 즉 철강·알루미늄의 투입량, 투입가격에 대한 산정근거를 요청받게 될 것이다.

제출하는 자료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회사의 자율에 따르며 한글자료를 영문자료로 변환해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자료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보안 이슈가 있다면 정보제공 요청서에 나와 있는 CBP 담당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CBP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필자는 가능한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하는데 그 이유로 정보제공요청의 이면에는 현재 관리 수준이 어떤지 판단하려는 의도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기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보제공요청은 CBP 사후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최초 접수했을 때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실무상 정보제공요청에 잘 대응하지 못해 실패하는 케이스로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CBP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제공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가관세 납부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정보제공요청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면 추가관세 납부 이후 이의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 인정받게 되므로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요청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CBP 의도 파악, 자료 준비, 제출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Notice of Action(Form 29)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CBP는 검토를 시작하고 검토 결과는 Notice of Action을 통해 한 번 더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최종 판단하게 된다.

추가 정보 요청 시 20일 정도 추가기간이 주어지며 만약 응하지 않는 경우 최종 정산(Liquidation)된다. 또한 추가 정보 요청 없이 원산지가 인정되거나 원산지 변경으로 관세율 상향통지(Rate Advance) 취지로 정산될 수 있다. 만약 통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Protest)를 하고 싶다면 정산일(Date of liquidation)로부터 180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난해 비특혜원산지 검증 시 CBP는 본 단계에서 추가 정보 요청 없이 곧바로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판단했고 관세율 상향통지를 했다.

2.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대응 전략

CBP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수출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사전 진단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HTS(품목분류), 비특혜원산지,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물품이라면 품목분류를 검토해야 하는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인지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상당하다. 필자가 속한 관세법인의 경우 2025년에 철강이 함유된 자동차부품의 품목분류 재검토를 통해 기존 철강 HS(합량 50%)에서 기계부품 HS(상호관세 15%)로 변경을 추진해 관세율을 대폭 낮춘 경험에 있다.

원산지의 경우 최종생산국 이외에 원재료국가, 제조공정국가 등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안하고 유사물품에 대한 CBP Ruling(사전심사)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해야 한다. 원산지 국가별로 관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한국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멕시코 현지공장을 운영한다면 SCM 전체 제조과정을 추적해 원산지 판정을 해보고 관세율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최근 들어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따른 관세 최소화 전략(Tariff Engineering)에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공장 생산물품까지 포함해 비특혜원산지 판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과 같은 특혜원산지 판정을 동시에 의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전 진단의 목표는 HTS, 원산지의 최종 확정보다는 관세율 변동성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크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자료 보관(Record Keeping)

30일이라는 한정된 기한 내 정보제공요청에 대응해야 하므로 자료 보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은 요구사항에 맞는 자료를 적시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 보관은 물론, 각 자료 간 연결성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출자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와 사전에 자료 보관 및 제출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II. 정보제공요청 대응 및 관세 최소화를 위한 전략: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임시로 대체하는 글로벌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율 10%(15% 상향 예정)를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거나 면제 대상 HTS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무역법 301조 대중국 보복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품목별 관세 핵심 판단 기준인 미국 관세율표에 근거한 정확한 HTS 확인과 중국산 여부 판단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판정의 중요성도 여전하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CBP의 정보제공요청을 통한 비특혜 원산지검증 착수 소식은 관세를 결정짓는 제반 요소인 HTS, 원산지, 과세가격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역량을 우리 수출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과는 미국 내 모든 세관에서 통관 시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관세율 확정 및 정보제공요청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이다.

이에 관세 제반 요소이자 미국 수입통관 신고사항인 HTS, 원산지, 과세가격을 CBP로부터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인 사전심사(Advance Ruling)와 실제 수출기업 활용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1.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개요

1) 개요

미국으로의 상품 수입과 관련해 CBP에 HTS 품목분류(Classification), 원산지(Country of Origin), 원산지 표시(Marking), 무역프로그램 및 무역협정(Trade Program or Trade Agreement), 관세 과세가격(Valuation)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전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다.

2) 법적 근거

Part 177 of the CBP Regulations(19 C.F.R. Part 177 ADMINISTRATIVE RULINGS)

3) 신청 효과

CBP로부터 회신받은 서면답변(Ruling Letter)은 특정 거래 또는 이슈에 대한 CBP의 공식 입장임으로 미국 내 모든 세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입신고 시 활용된다.

4) 신청 절차

CBP 홈페이지에서 'Electronic Ruling' 메뉴(erulings.cbp.gov)에 접속해 HTS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를 정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관세 과세가격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무료다. 신청자는 수출자, 수입자, 제조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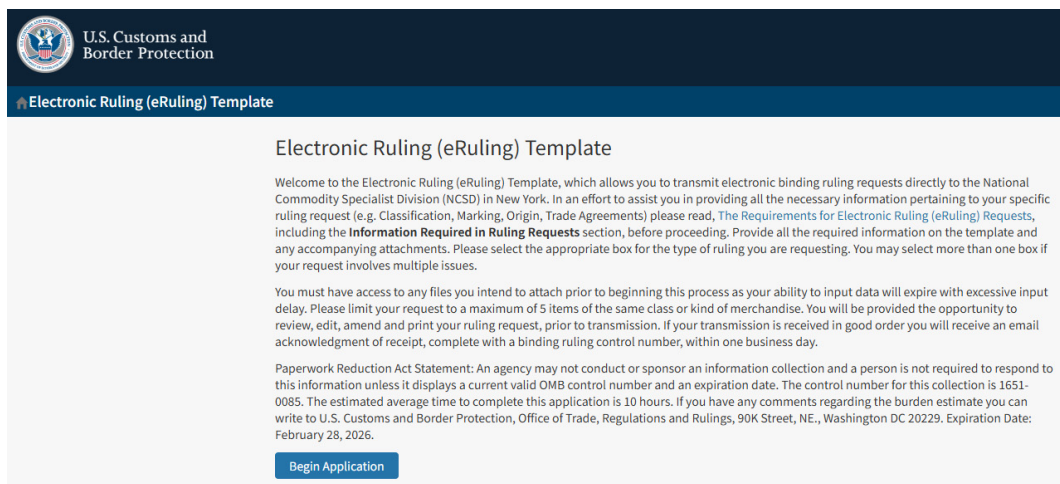
받은 대리인이 해당되므로 우리나라 관세사도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전심사 신청에 같은 종류(Same class or kind)의 물품을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담당부서는 NCSD(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로 NCSD는 CBP Regulations and Rulings 부서에 속한 사전심사 전담부서다. NCSD는 NIS(National Import Specialist)들로 구성된 CBP 내부 HTS 품목분류, 원산지 분야 전문가다.

신청 시 'Electronic Ruling' 메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물품 상세정보를 자율양식으로 첨부 가능하며 신청물품 관련 산업별로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HTS 품목분류의 경우 물품 상세설명, 구성요소, 관세율표 해석상 분류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원산지는 각 원재료가 만들어지거나 수확된 국가, 다양한 생산단계가 발생한 국가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내 공식적인 서면답변을 신청자 이메일로 받게 된다. 만약 NCSD에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시할 정보를 기재한 보완통지를 하게 된다. 만약 보완통보 내용상 불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철회 신청도 가능하다. 사전심사 결과회신 및 보완통지에 CBP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가 있으므로 의문사항은 메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

다만 질의사항에 쟁점이 있어 NCSD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이미 유사쟁점을 NCSD 상위부서인 Regulations and Rulings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면 회신기간이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CBP의 공식의견인 서면답변은 신청서에 명시된 물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만 적용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Welcome to the Electronic Ruling (eRuling) Template, which allows you to transmit electronic binding ruling requests directly to the 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 (NCSD) in New York. In an effort to assist you in providing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pertaining to your specific ruling request (e.g. Classification, Marking, Origin, Trade Agreements) please read, [The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uling \(eRuling\) Requests](#), including the **Information Required in Ruling Requests** section, before proceeding. Provide all the required information on the template and any accompanying attachments. Please select the appropriate box for the type of ruling you are requesting. You may select more than one box if your request involves multiple issues.

You must have access to any files you intend to attach prior to beginning this process as your ability to input data will expire with excessive input delay. Please limit your request to a maximum of 5 items of the sam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You will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review, edit, amend and print your ruling request, prior to transmission. If your transmission is received in good order you will receive an email acknowledgment of receipt, complete with a binding ruling control number, within one business day.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85.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10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Trade, Regulations and Rulings, 90K Street, NE., Washington DC 20229. Expiration Date: February 28, 2026.

[Begin Application](#)

사전심사 신청 화면(출처: CBP 홈페이지)

5) 사전심사 사례 조회

CBP의 모든 서면답변은 CBP 홈페이지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색 키워드로 사전심사번호, 품명, HTS, 원산지, 신청자명 등을 입력하면 기존 사전심사 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rulings.cbp.gov).

2. CBP 사전심사와 관세 절감 사례

최근 몇 년 새 한국 수출기업의 사전심사 신청이 대폭 증가했고 그중 수출기업이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HTS 재확인을 통한 철강 관세(50%) 절감 사례(N348713, 2025.5.16.)

철강제 자동차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A사는 기존 미국 수입신고 HTS를 제7326.90호(철강 기타제품)로 신고했으나, 사전심사 결과 제8481.90호(유압밸브 부품품)로 분류돼 철강 관세 50%, 자동차 부품 관세 25%를 면제받아 상호관세 15%만 적용받았다.

이 사례는 수입관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미국 수입신고 HTS를 재검토해 품목별 관세를 정확히 판단한 사례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전심사 활용 실익이 크며 현재 기준으로는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따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임시 글로벌관세 10%를 적용받았다.

2) HTS 재확인을 통한 상호관세(15%) 절감 사례(N348713, 2025.5.16.)

증강현실 헤드셋을 미국에 수출하는 B사는 상호관세 면제 품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제8471.41호(기타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분류돼 상호관세 15%를 면제받아 무관세 혜택을 유지했다.

이 사례는 HTS별로 규정된 상호관세 면제 품목을 확인받은 사례로 현재 기준으로는 무역법 122조에서도 상호관세 면제와 동일하게 임시 글로벌관세 면제 대상이다.

3) FTA 원산지과 비특혜원산지 상이 사례(N350768, 2025.7.28.)

배추김치를 미국에 수출하는 C사는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를 사용해 한국에서 양념 제조, 버무리, 최종가공 이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사전심사 결과 한·미 FTA는 세번변경기준 충족으로 한국산을 인정받았으나, 비특혜원산지는 중국산 배추 사용으로 인해 중국산으로 결정돼 FTA 특혜관세 혜택과 별개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보복관세 25%, IEEPA 펜타닐관세 10%가 부과됐다.

이 사례는 동일 물품에 대한 특혜원산지, 비특혜원산지가 상이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적용되는 관세가 상이하므로 원산지 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중국산 100% 원료 한국산 사례(N332069, 2023.5.3.)

미국에 수출하는 D사는 플라스틱병 생산에 사용되는 PET 수지를 중국에서 수입 후 한국에서 화학 반응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했다. 사전심사 결과 100% 중국산 PET 수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추가로 수행되는 화학반응공정에 기인해 플라스틱병 원료인 PET 수지가 최종생산되므로 비특혜원산지 한국산으로 인정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보복관세 25%를 면제받았다.

이 사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최소화**를 위해 **기준에 전부 중국에서 생산하던 제조공정을 일부 한국으로 이전해 관세를 절감한 사례**로 **국가별 관세율 및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분석 후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음을 산업적 관점에서 주장해 인정받았다.**

5) 한국산 주원료 중국 최종생산 한국산 사례(N340244, 2024.6.5.)

자동차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를 미국에 수출하는 E사는 한국산 절연전선 및 부자재를 중국 생산공장으로 수출 후 현지에서 최종조립해 완제품 와이어링 하네스를 생산했다. 한국으로 재수입, 검사, 포장공정을 거친 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로서 사전심사 결과 중국에서 최종조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선에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이 있다고 인정받아 비특혜원산지 한국산 인정 및 무역법 301조 대중국 보복관세 25%를 면제받았다.

이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인 실질적변형이 발생된 국가를 정하는 기준이 최종조립 국가가 아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재료의 원산지 국가로 결정된 사례다.

3. 수출기업 활용 전략

1) HTS 품목분류 활용

상호관세 위법판결 영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HTS에 관한 사전심사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율표 해석은 산업별, 품목 특성별로 상당한 이견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해석 방식으로 미국의 HTS를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2) 원산지 활용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지는 이제 특혜원산지와 비특혜원산지로 이원화해 관리해야 한다. 상호관세 위법판결의 영향으로 관세율에 다소 조정이 있지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향후 국가별, 산업별 조사를 통해 국가별로 차등 관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높은 만큼 원산지 판정과 증빙자료 준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받는 것도 사후검증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사전심사 신청은 수출기업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심사가 법적 유권해석으로 거래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관세 전문가와 함께 관세율 영향, 쟁점분석, 기존 사례검토를 충분히 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

미 CBP 통관 리스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집행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통관 검증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품목분류, 원산지를 중심으로 통관 단계는 물론 사후 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세조사와 관세추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본지는 KO 한국 수출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CBP 동향과 통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한다.

"CBP 검증 강화 시대" 한국 기업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최근 CBP 사전심사 사례로 보는 시사점 -



홍 용택 | KOTRA 워싱턴 D.C. 무역관(부장)

I. 서론: 통상 환경 변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안보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수입관리 체계는 품목분류(Classification),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등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 CBP의 사전심사(Ruling) 사례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특정 물품의 법적 지위를 해석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기능한다. 최근 판정 사례들은 복합 재질 제품, 제3국 가공의 원산지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판정 사례를 분석해 수출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CBP의 기준

1. 품목분류(Classification): ‘본질적 성질(Essential Character)’의 엄격한 적용

미국 관세율표(HTS)는 국제 HS 협약을 따르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일반해석원칙(GRI) 제3호(b)에 따른 ‘본질적 성질(Essential Character)’ 판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의 최종 용도나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명칭보다, 물품의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재질이나 구성 요소가 분류의 우선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주요 사전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

- NY N352224(2025.8.27.) 사전심사 사례 중 발췌

“Classification of merchandise unde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i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s). GRI 3(b) provides that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which may b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its bulk, quantity, weight or value, or by the role of a constituent material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article. We find that the gasket assembly is a composite good. The gasket forms a seal around the battery to prevent foreign substances and moisture from entering. The essential character is imparted by the EPDM rubber component.”

“미국 통일관세표(HTSUS)에 따른 물품 분류는 통칙(GRI)에 의거함. 통칙 제3호나목에 따르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복합물, 그리고 소매용 세트 물품은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뤄진 것으로 봐 분류함.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중량, 가액 또는 물품의 사용에 있어 구성 재료가 완수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본 기관은 해당 가스켓 어셈블리를 복합물로 판단함. 가스켓은 배터리 주변에 씬(seal)을 형성해 이물질과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EPDM 고무 구성요소에 의해 부여됨(저자 번역).”

- 판정번호: NY N352224(2025.8.28.)
- 대상 품목: 전기차 배터리용 가스켓 어셈블리(품번: GI375-28000)
- 용도: 전기차 배터리의 상단 및 하단 케이스 사이에 장착돼 외부 이물질과 수분 유입을 차단하는 씬(Seal) 역할
- 재질: 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모노머)고무 본체에 연결용 작은 강철 링(Steel rings)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 복합 물품
- 판정 결과: 통칙 제3호(b)에 의거, 금속 링이 포함돼 있으나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밀봉 기능)은 EPDM 고무에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 기본관세 2.5%와 2025년 4월 5일부로 발효된 상호관세 15% 추가¹⁾

1) 2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관세율 적용		
항목	분류코드(HTSUS)	세율(Duty Rate)
기본 품목분류	제4016.93.10.50호	2.5%(기본 관세)
추가 관세(상호관세)	제9903.02.56호	15%(추가 관세)
최종 합계 세율	-	총 17.5%

● 사례 2 ●

- 판정번호: NY N351806(2025.8.27.)
- 대상 품목: 특정브랜드의 에어 매트리스 5종
- 제품 특징: '에어 스트링(Air String)' 지지 시스템을 핵심 구조로 하며, TPU 및 PVC 소재의 공기 주입 구조와 고탄성 폼 토퍼, 외장 원단 등으로 구성됨. 공기가 없으면 압축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기 주입식(Pneumatic) 제품임.
- 판정 결과: 가구(매트리스)가 아닌 플라스틱제 공기 주입식 제품으로 분류됨["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재료로 만든 제품: 기타: 공기 매트리스 및 기타 주입식 제품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
- 관세율: 기본관세율 4.2%와 2025년 4월 5일부로 발효된 상호관세 15% 추가

관세율 적용		
항목	분류코드(HTSUS)	세율(Duty Rate)
기본 품목분류	제3926.90.75.00호	4.2%(기본 관세)
추가 관세(상호관세)	제9903.02.56호	15%(추가 관세)
최종 합계 세율	-	총 19.2%

2. 원산지 판정: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미국은 원산지 판정 시 협정상의 기준 외에도, 국내법상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물품의 명칭(Name), 성격(Character), 용도(Use)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사례 3 ●

- 판정번호: NY N351810(2025.8.27.) 내용 발췌

"CBP has held that whether a manufacturing process is sufficiently complex to rise to the level of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s determined upon consideration of all the operations that occur within that country. Here, the final assembly processes are rather simple and do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serting and pressing components into a housing does not change the shape, character, or predetermined use of the inputs. Instead, we look to the origin of the

housing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fluid end, as it is the essential component of the product. It contributes to the pressurization process, encases the internal components, and accounts for 90 percent of the finished product's value.”

“CBP는 제조공정이 실질적변형 수준에 이를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를 해당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고려해 판단해왔음. 본 건의 경우, 최종조립 공정은 다소 단순하며 실질적변형을 구성하지 않음. 부품을 하우징에 삽입하고 압착하는 행위는 투입 재료의 형상, 특성 또는 예정된 용도를 변화시키지 않음. 대신 본 기관은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인 ‘하우징’의 원산지를 통해 유체단의 원산지를 결정함. 하우징은 가압 과정에 기여하고 내부 부품을 감싸며, 완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임(저자 번역).”

- NY N351810(2025.8.27.)
- 대상 품목: 유압 펌프용 부품
- 실질적변형기준: 부품을 끼워 넣고(Inserting), 압착하고(Pressing), 그리스를 바르는 등의 최종조립 공정은 ‘다소 단순(rather simple)’하며, 재료의 성격이나 용도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제품 기능: 하우징은 전체 제품 가치의 90%를 차지하며,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압력을 견디는 가장 핵심적인(Essential) 구성 요소
- 형태의 변화: 단순히 사각형 모양이었던 강철 블록이 정밀한 천공(Drilling)과 보링(Boring) 공정을 거쳐 설계 규격에 맞는 하우징으로 변모하는 단계를 가장 중요한 제조 과정으로 판단
- 판정 결과
 - 시나리오 1: 중국산 철강 블록이 한국에서 정밀 가공(천공, 보링 등)을 거쳐 비로소 ‘플루이드 엔드 하우징’이라는 설계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변모했으므로 원산지는 한국
 - 시나리오 2: 한국에서 가공된 블록이 중국에서 최종 정밀 가공을 통해 하우징으로 완성됐으므로 원산지는 중국

시나리오		
항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핵심가공 (하우징)	한국 (중국산 블록가공)	중국 (한국산 블록가공)
최종조립	한국	중국
원산지	한국	중국

III. 결론 및 시사점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하며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 입증을 위한 기술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사례 1(배터리 가스켓)과 사례 2(에어 매트리스)에서 보듯, CBP는 제품의 명칭이나 마케팅 용도보다 GRI 3(b)에 근거한 기능적 핵심 소재를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한다. 복합 재질 제품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각 구성 요소의 중량, 부피, 가액 및 기능적 기여도를 수치화해 관리해야 한다.

둘째, '단순 조립'을 넘어선 가공공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사례 3(유압 펌프용 부품)의 판정 결과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CBP는 단순히 부품을 끼워 넣거나(Inserting), 압착(Pressing)하고 도색하는 수준의 공정은 원산지를 바꿀 정도의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국 소재를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핵심 부품의 정밀 가공이 한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출 예정 물품의 분류나 원산지가 불분명할 경우, CBP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KOREA', 'ORIGIN'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품의 본질적 특성, 원산지 등 자사 제품과 관련된 최근 CBP 판정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미 FTA] 제7308.90호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은 한국산이어야 할까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제7308.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이 한국산이어야 하나요?
질문	■ 제7308.90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에 행하여진 다음 공정의 결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 목적을 위한 부착공정 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단, 용접, 결합, 또는 부착물의 최대 크기는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 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닳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재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답변	제7308.90호의 제품 생산 시 비원산지 재료인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308.90호에 규정된 공정이 수행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부분 FTA에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가.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완전생산기준), 나.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리고 제6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불

완전생산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원산지재료 생산품)” 모두 FTA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결국 원산지 판정 시에는 완전생산기준이나 원산지 재료 생산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물품은 그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으나, 일부 품목들은 특별한 조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 제7308.9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제7308.90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각 HS Code별로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전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 협정에서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한·미 FTA 제6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이번 호 주제인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탐·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관·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들은 보통 봉(bar·rod)·관(tube)·형강(angle·shape·section)·시트(sheet)·판(plate)·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후프(hoop)·스트립(strip)·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

한·미 FTA에서 제7308호는 다른 제73류 제품에서 적용하는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7308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에 행하여진 다음 공정의 결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목적을 위한 부착공정 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단, 용접,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결합, 또는 부착물의 최대 크기는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닳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재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일단 제7308호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제7216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이 분류되는데, ‘형강’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제품으로서 제72류 주 제1호(용어의 정의) 자목(반제품)·차목(평판압연제품)·카목[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타목(그 밖의 봉)·하목(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7216호에 해당되는 형강의 모양은 보통 H·I·T·Ω·Z·U[구상(channel)도 포함한다]·둔각·경각이나 직각(L)형이다. 여기의 형강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근 것·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단부(edge)가 구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 앵글(bulb angle)이나 조선용 빔(shipbuilding beam)]이 있다.

제7216호의 형강에는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은 제외되는데, 제7308호 해설서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판(sheet)이나 형강으로 만든 자동차전용도로용의 보호방책, ‘와이드 플랫(wide flat)[유니버설 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스트립(strip)·봉·형강과 관(管)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구부림이나 나칭(notching)한 것]한 부분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308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공정들은 대부분 제7216호의 형강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이 진행돼 제7308호로 세번변경이 이뤄지는 상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목적에 위한 부착공정, 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단, 용접, 결합, 또는 부착물의 최대 크기는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닳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재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으로 인해 제7216호에서 제7308호로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다목의 취급목적에 위한 부착공정, 마목의 도료, 아연도금 등의 도장공정 등으로는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제7308호에서도 형강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구멍

뚫음(천공)·구부림이나 나칭(notching)한 것], [which have been prepared(e.g., drilled, bent or notched) for use in structures]한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구조물용으로 추가적인 가공(드릴링 등)을 진행한다면 세번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은 제7308.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이 한국산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해당 결정기준이 한국산 형강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한국산 형강을 사용해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제시된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다면 제7308호의 물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고, 만약 비원산지 형강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면, 역내산 형강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할 필요가 없고, 비원산지 형강에 대해서만 제시된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2) 답변 내용의 해석

기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미 FTA 제6.1조(원산지 상품) 나목(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상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6.1조에서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other requirements specified)한다는 것은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다른 규정(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상황을 말하는데,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특정 원재료(HS Code)에 대해 “~을(를) 제외한다(except from)”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때 세번변경기준 등 원칙적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HS Code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제외세번이나 가공공정기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관세율표 제11부(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규정이다.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6101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1.10호 내지 제61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다만,

HS Code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가. 그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갖추도록 편직) 및 봉제되거나 달리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의류 제품에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는 제61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change to subheading 6101.10 through 6101.3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or 60.01 through 60.06, provided that:
	(a) the good is both cut (or knit to shape)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b)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hapter Rule 1 for Chapter 61.

다만, 제7308호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7216호의 제품에 대하여 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에 행하여진 다음 공정의 결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except for changes resulting from the following processes performed on angles, shapes, or sections classified in heading 72.16)”고 규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제7216호라는 HS Code를 단순히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공정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7308.90호의 제품 생산 시 비원산지 재료인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308.90호에 규정된 공정이 수행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즉, 비원산지 재료인 형강(제7216호) 전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공정만을 수행한 형강을 제외(즉, 이 경우 원산지 재료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7308호에 사용되는 제7216호(형강)에 대한 불인정공정기준을 도입한 것이라 판단된다. 한·미 FTA는 타 협정에 존재하는 불인정공정기준에 관한 일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와 같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물품(HS Code)별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제7216호에서 제7308호로 HS Code가 변경되는 공정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등의 공정으로 가능하나, 이러한 공정만 수행한 제7308호의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제7308호에서 규정하는 공정을 수행한 형강은 현실적으로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관련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제7308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해 흥미로운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Ruling[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사례를 소개한다. HQ 964160(2001.7.18.)에서는 ‘fabricated structural steel joists(long span joists)’에 대한 NAFTA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했는데, 해당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철이나 비합금강

형강의 일부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했다(NAFTA의 제7308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미 FTA와 동일하다).

각 원재료는 설계 규격에 맞게 절단(cut)되며, 필요한 경우 드릴링(drilling) 또는 천공(punching)되며, 이후 이 부품들은 조립돼 가(임시) 용접(tack welding)된 후, 규격 적합성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 용접(permanent welding)되고, 검사 및 도장 후 출하 준비를 한다. 결국 비원산지 형강이 drilling(드릴링), cutting(절단), punching(천공) and painting(도장)의 작업을 거치는 것이고, 해당 공정은 제7308호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제7308호의 용어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①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②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뉜다. 이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 품목군이며, 제7308호에 대한 NA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구조물 또는 그 부분품으로 가공돼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물품, 즉 제7308호의 두 번째 품목군[②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에만 적용되며, 철강의 구조물 및 부분품으로 이뤄진 첫 번째 품목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7216호 해설서상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Articles prepared for use in structures(heading 73.08)]이 제7216호에서 제외돼 제7308호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7216호를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은 NAFTA 목적상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무의미한 잉여 조항(useless surplus)’이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7216호의 형강이 ‘새롭고 다른 상업적 상품(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 즉, 제7308호의 구조물이나 그 부분품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BP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① 제7216호의 형강은 제7308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된 일부 공정을 거치더라도, 품목분류 목적상 여전히 제7216호에 분류되며, ② 만약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의 입안자가 제7216호 물품 중 제7308호의 구조물 부분품으로 변환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였다면, 입안자는 물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작성했을 것임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제7308호의 명문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를 구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CBP는 캐나다에서 일부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해 제작된 long span joists는 NAFTA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NA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강을 통해 제7308호의 물품을 생산하는 데는 드릴링, 천공 등의 가공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공정을 거친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추가로 살펴봐도 어떤 추가공정이 있어야 제7216호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제7216호에 해당되는 형강으로 제7308호의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형강 자체를 원산지 재료로 우선 판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CBP Ruling에서 미국산 형강을 토대로 만든 제7308호에 관한 사항은 누적을 적용해 NAFTA를 충족한 사례(HQ 561152, 1999.3.8.)가 있다.

또한 제7308호의 경우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이 분류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미조립, 분해 물품)의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이스라엘 FTA에서는 제3.23 조(분할 수입)에서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통칙 제2호 가목의 의미 내에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6부부터 제19부까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되거나 미조립된 상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증명은 첫 번째 분할 수입시 관세 당국에 제출된다”고 규정하며, 명시적으로 제7308호를 언급하기도 한다.

결국 이는 미조립, 분해된 상태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각각 분류해 원산지 판정의 대상으로 볼지 하나의 물품을 원산지 판정의 대상으로 볼지에 관한 문제다. 관세청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① 수출국에서 생산돼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른 완성물품의 주요 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CBP Ruling 사례는 HQ 562056(2002.1.7.)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7216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세번 변경기준 외 다른 결정요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강에 대한 공정제한을 규정한 제7308호의 경우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에 대해 규정에서 제시한 공정 외의 공정을 진행해 제7308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한다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해석하며 더 나아가 원산지 판정 및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배변봉투의 HS Code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소재의 반려동물용 배변봉투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의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에 해당된다면 제 3923.21-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FTA / 소가죽 원단의 한·EU FTA 적용

**인도산 소가죽 원단 Buffalo Crust(HS 제4107.99호)를 이탈리아에서
가공한 뒤 한국으로 수입(HS 제4107.12호)할 경우 EU 원산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수입 시 HS 제4114호로 변경하면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문의하신 HS Code 제4107.12호의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인도산 소가죽(HS 제4107.99호)을 수입해 가공 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HS 제4107.12호) HS 제4107호에 변동이 없어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에 한·EU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 추가 가공해 직물의 HS Code가 제4107호에서 제4114호(새미가죽, 패이턴트 레더 등)로 변경된 경우에는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돼 한·EU FTA 적용

이 가능합니다.

HS 4114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특수통관 / 서적 해외 직구

서적을 해외 직구할 때는 물품가액이 150달러를 넘더라도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해외 직구 물품의 관세율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된다면 제4901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관세는 기본세율(A) 0%이고, 부가세는 다음 규격에 해당될 경우 면세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규격

[규격]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규격]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전자출판물

■ 제4901호 해설서

(A) 서적(book)과 소책자(booklet) : 이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언어나 문자(점자나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예작품·교과서 [습자책으로도 불리는 교육용 학습장 포함하며 질문이나 연습(보통 손으로 완성되는 공간이 있다)이 포함된 이야기체의 본문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 전문서 ; 사전·백과사전·성명록(예 : 전화번호부 ['옐로우 페이지(yellow page)'를 포함한다]) 등의 참고서적·박물관·공공도서관 카탈로그(catalogue)[상업용 카탈로그는 제외한다] ; 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 악보가 있는 찬미가집은 제외한다)과 같은 예배용 책 ; 아동용 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책자는 한 권 이상으로 제본되는 경우가 있으며(종이로 되어 있거나, 얇은 표지나 두꺼운 표지를 사용), 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는 시트(sheet)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와 제본용으로 디자인된 것도 있다.

수입통관 / 징수

담보제공생략자인데 체납이 발생하면 제외되나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생략자가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을 즉시 중지하고 담보제공 대상으로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켈 추출 후 남은 화학공업 잔재물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출처: AI 생성 이미지)

항공기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는 초고온의 가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니켈 기반 초합금으로 제조된다. 수명을 다한 엔진 블레이드는 단순한 고철을 넘어 전략물자인 니켈과 코발트 등을 다량 함유한 ‘도시광산’의 핵심 자원으로 손꼽힌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친환경 트렌드에 힘입어 이러한 폐블레이드에서 유가금속(니켈 등)을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을 재처리하려는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니켈을 일차적으로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의 품목분류다. 제 2620호(광, 슬래그 및 회)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1류나 제81류의 ‘금속폐기물’로 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비행기 터빈 블레이드에서 화학공정을 거쳐 니켈을 추출 후 남은 회색 덩어리상(갈슘, 탄탈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혼합물)으로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트와 스크랩을 포함)’에 해당하는 제8103.30-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본 제품이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8호에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좀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제2620호의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620호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제2619호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웨이스트(waste)나, 중고 금속제품이나 부서진 금속제품으로 구성된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 제16부)**”

즉, 제81류에 해당하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부산물이며, 화학 공정,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으로 생성된 잔재물일 경우 제2620호에 분류될 수 있다.

본 물품은 비행기 터빈 블레이드에서 배출된 니켈계 합금을 여러 화학공정을 통해 니켈 등을 회수하고 남은 것으로 탄탈륨, 알루미늄, 티타늄 등 여러 금속이 혼재된 회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잔재물로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웨이스트나 중고 금속제품 등에서 나온 스크랩이 아니며,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제2620호에 분류할 수 있다.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탄탈륨, 알루미늄, 티타늄 등 여러 금속이 혼재된 회색계 불규칙한 덩어리상의 잔재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99-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TANTALUM WASTE AND SCRAP	8103.30-0000 (A 0%)	Residues containing metal	2620.99-0000 (A 2%)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19일
판매 개시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6년

관세행정

과대료·과징금 편람

관세법인코이라임 서정년, 조훈구

신간

2026년

관세행정 과대료·과징금 편람

2026년

관세행정 과대료 과징금 편람

관세법인코이라임 서정년, 조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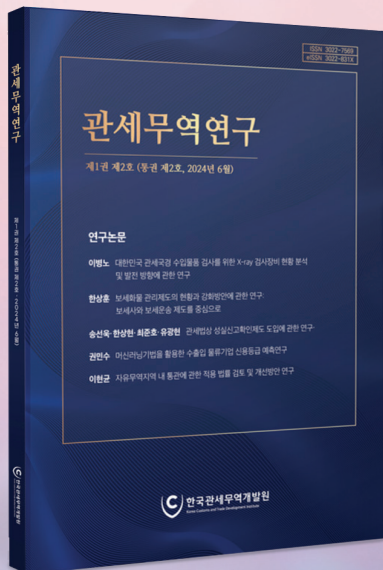
1. 관세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대외무역법
5. 농수산물외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 외국환거래법
7. 관세사법

한국세관협회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